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 의 자	조배식 의원 외 6명
발의연월일	2020. 2. 3.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호	제 1 호
--------------	-------

발의연월일 : 2020. 2. 3.

대표발의자 : 조배식

공동발의자 : 김진호, 이계천
박영자, 조용훈
김남충, 최정숙

1. 제안이유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설치(안 제1조~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 위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6조)
-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청취할 수 있음(안 제8조)
-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16조의2, 제132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타사항 : 조례안 붙임

○ 입법예고 : 2020. 2. 3. ~ 2020. 2. 8.(6일간)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하여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논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책 자문
2. 자치입법, 의회운영,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회 의장이 자문을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논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전직 시의회 의원
2. 대학의 교수 및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각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

4.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등)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구성), 제9조(실비보상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

나. 추계결과

- 2020년~2024년(정례회 및 임시회 2번 개최)
- 소요예산 : 시비 3,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00천원 × 18명 × 2회 = 3,600천원
- ※ 재원조달방안 : 시비예산

3. 작성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강 대 영 (☎ 041-746-6847)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시 비	3,600	3,600	7,500	3,600	3,600	18,000
세 출	3,600	3,600	7,500	3,600	3,600	18,000
(회의 참석수당)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재원 조달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3,600	3,600	3,600	3,600	18,000
	지방세	3,600	3,600	3,600	3,600	18,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32조(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 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 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